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737
----------	-------

발의연월일 : 2025. 9. 5.

발 의 자 : 민병덕 · 김영배 · 황정아
박해철 · 정준호 · 김남근
전용기 · 한민수 · 김태년
이용우 · 이인영 · 안호영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출생한 자녀의 생부(生父)가 모(母)와의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에, 생부는 모가 제3자와의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모의 협조를 받아 인지의 효력이 있는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음.

그런데 모가 다른 남성과의 법률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출생자는 「민법」상의 친생추정의 법리에 의해 그 법률상 남편의 자(子)로 추정되어 생부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음. 이 경우 현행법에 따르면 출생신고 의무자는 모와 모의 법률상 남편이 되는데, 현실에서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아니하는 사례가 많음. 최근 헌법재판소는 혼인 중인 여자와 배우자가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 생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 조항에 대해 아동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2021헌마975, 202

3. 3. 23. 결정)을 하였음. 이후 출생통보제 조항이 신설되었으나 의료기관 외에서 출산한 경우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신고의무자인 모 또는 법률상 배우자가 신고하지 아니할 때는 신고기간이 도과할 때까지 출생신고가 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신고기간 내에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생부가 혈연관계를 소명하여 인지의 효력이 없는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4제3항 등).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6조의2에 따라 생부가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모는 제44조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부의 성명·본·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부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의 기재를 유보하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생부의 출생신고) ① 출생자가 제3자로부터 「민법」 제844조의 친생자 추정을 받는 경우로서 제44조제1항의 기간(의료기관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제44조의4제2항에 따른 최고기간) 이내에 출생신고가 되지 아니한 때에는 생부(生父)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제44조의4제3항에 따라 이미 등록부에 출생이 기록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생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없다.

- ③ 제1항에 따른 출생신고를 함에 있어서 생부는 제44조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성명·본·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의 기재를 유보할 수 있다.
- ④ 생부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라 생부와 출생자와의 혈연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검사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⑤ 제46조제1항의 신고의무자는 제1항의 출생신고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읍·면의 장이 확인하여야 한다.
- ⑥ 그 밖에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부의 출생신고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출생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4조의4(출생신고의 확인·최고 및 직권 출생 기록) ①·②(생략)	제44조의4(출생신고의 확인·최고 및 직권 출생 기록) ①·②(현행과 같음)
③ 시·읍·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료를 첨부하여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해당 출생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 ----- ----- ----- ----- ----- -----.
<u><단서 신설></u>	<u>다만, 제46조의2에 따라 생부가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46조(신고의무자) ① (생략)	제46조(신고의무자) ① (현행과 같음)
②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 <u><후단 신설></u>	② ----- ----- 이 경우 모는 제44조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u>부의 성명·본·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부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u>

③・④ (생 략)

<신 설>

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의 기재를 유보하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③・④ (현행과 같음)

제46조의2(생부의 출생신고) ①

출생자가 제3자로부터 「민법」 제844조의 친생자 추정을 받는 경우로서 제44조제1항의 기간(의료기관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제44조의4제2항에 따른 최고기간) 이내에 출생신고가 되지 아니한 때에는 생부(生父)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제44조의4제3항에 따라 이미 등록부에 출생이 기록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생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생신고를 함에 있어서 생부는 제44조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성명・본・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의 기재를 유보할 수 있다.

④ 생부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라 생부와 출생자와의 혈연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검사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46조제1항의 신고의무자는 제1항의 출생신고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읍·면의 장이 확인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